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디자인 경쟁력은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AI 기반 혁신 디자인 기술을 지역 산업에 도입하고, 전주기 디자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 브랜드 고도화, 디지털 융합 마케팅 디자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나.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상품 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2) 필요성 :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 1) 중소기업 디자인·상품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2) 전주기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 3)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평가 관리
- 4) 사업 수행 점검, 컨설팅 및 성과 관리
- 5)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1.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5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고
500	95	375	3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26)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3. 부서 의견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디자인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위탁 추진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인건비는 참여인원 대표단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나. 2024년부터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강화 사업’ 위탁  
(사업비 5억원 편성·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95	95	95	95	95
○ 직접비		375	375	375	375	375	1,875
○ 간접비		30	30	30	30	30	150
계		500	500	500	500	500	2,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500	500	500	500	500	2,5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00	500	500	500	500	2,5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 장현호(☎480-6105)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500,000	
인 건 비	95,000	· 참여직원 인건비 95,000천 원 ※ 대표단가(차등)×참여기간(차등)×참여율(차등)
직 접 비	375,000	· 기업지원비 338,000천 원 - 전주기 디자인 혁신상품 개발 150,000천 원 - 데이터 기반 브랜드 디자인 고도화 108,000천 원 - 디지털 융합 마케팅 디자인 60,000천 원 - 로컬 가치 창출형 브랜드 및 디자인 상품개발 20,000천 원 · 전문가활용비 13,000천 원 - 선정평가 7,000천 원 - 중간점검·자문·컨설팅 1,500천 원 - 결과평가 4,500천 원 · 사무용품비, 홍보비, 운영비 등 24,000천 원
간 접 비	30,000	· 기관 공통경비 30,000천 원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권 미 영
	팀 장	시 병 연
	담 당 자	장 현 호 (480-6105)